

호남지방데이터청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공고

호남지방데이터청에서는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. 10. 1.
호남지방데이터청장

1.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

○ 채용부서: 강진사무소

구분	인원	채용일	계약방법	근로조건	임금 ^{26년 기준}
공무원근로자 (통계조사관)	1명	2026.11.2. (월)	근로계약 (만 60세 정년)	1주 40시간, 주5일 근무	기본급: 1,961,650원(호봉제), 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, 명절휴가비(설날/추석) 기본급 60% 등 제반수당 별도

※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는 『국가데이터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』, 『국가데이터청 취업규칙』, 『국가데이터청 임금협약서』 등을 따름
※ 근무장소: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 목리길 14

○ 수습기간: 2026. 11. 2. ~ 2027. 1. 31. (3개월)
-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(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)

2. 담당 업무

직종	주요담당업무
통계 조사관	○ 국가데이터청 강진사무소 소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- (표본 관리) 조사대상처(응답자)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, 신규 조사대상처 설치, 조사구 요도, 명부 수정보완 - (자료 수집 및 입력) 통계조사 자료수집,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, 자료 입력 - (기타)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, 현장조사업무 수행 - (주요 조사) 가계동향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, 농가경제조사, 농축산물생산비조사, 가축동향조사, 광업제조업동향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(국가데이터청 홈페이지 참고)

3. 채용 방법

1차 서류전형 → 2차 면접전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유무 및 이중취업 여부 확인(겸업 불가)
→ 채용 확정(수습기간: 3개월) → 적격성 심사(수습평가) → 정규 임용

□ 1차 서류전형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〈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〉

채용인원(분야별)	서류전형 선발인원
1명	5배수

□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공무원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4.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□ 필수요건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※ 응시연령은 면접일(2026. 10. 22.) 기준이며,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국가데이터청 「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
채용 결격사유

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유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)

□ 가점 및 우대사항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 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- 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
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
-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
- 다자녀 양육자 :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-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)

○ 장애인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
□ 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거짓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*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소속기관 포함)의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
 - 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 - **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(교육포함)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채용 일정

- 접수기간 : 2026. 10. 1.(목) ~ 2026. 10. 8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: ksy9733@korea.kr
 -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 ~ 18:00 내에 접수

- 우편 및 E-mail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반영되지 않음
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 소	전화번호
조사지원과 고 선 영	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1층 호남지방데이터청 고객지원실	전화: 062-370-6022 ksy9733@korea.kr

- 서류심사 : 2026. 10. 13.(화)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6. 10. 14.(수) 오후 15:00 이후
- 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: 2026. 10. 22.(목) 세부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10. 23.(금) 10:00 이후
 - 각 전형별 호남지방데이터청,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SMS발송
 - 업무 사정상 심사 및 발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

6. 제출 서류

□ 필수 제출 서류: 자필서명 필수(미 서명 시 접수 불가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-첨부1
- ② 응시원서-첨부2
- ③ 자기소개서-첨부3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-첨부4
- ⑤ 주민등록등본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5)
-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-첨부6

□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1부
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(2026. 7. 2. 이후)
- 자격사항 증빙서류 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5)
- 우대사항 증빙서류 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5)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

□ 전형별 점수 기준 (2025. 5. 1. 기준 적용)

(1차) 서류전형(100점)			(2차) 면접전형
경력, 자기소개서 등	자격증	기타점수	면 점
90	5	5	100

□ 평가기준 상세

- 자격증 점수(5점)

자격증	점수
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.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※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- 기타 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함께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 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소지자	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

7. 유의 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채용 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예정자는 부정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 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-첨부7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' 26. 10. 8.(목)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최종 합격자는 호남지방데이터청 해당(채용)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, 종료 10일 전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함
※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문의사항: 호남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고선영(062-370-6022)

<첨부1 필수 >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채용구분	성명	서명
공무직근로자(통계조사관)		(서명)

■ 작성목록(총괄표)

목 록		제출 여부
1. 첨부2 응시원서(필수) ※ 현 거주지 기재		
2. 첨부3 자기소개서(필수)		
3. 첨부4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필수)		
4. 첨부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		
5. 첨부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(필수)		
6. 주민등록 등본 (필수) ※ 공고일 이후 발급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)		
7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※ 호남지방데이터청 경력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 생략 가능. 단, 경력여부 체크 요망	국가데이터처 경력 여부	있음
	일반 경력증명서 제출 ※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	없음
8. (우대사항)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	
9. (우대사항) 기타 증빙자료 사본(해당자에 한함) ※ 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(취업지원대상자)		

* 제출서류에 대하여 '제출 여부'란에 "○" 표시 후 함께 제출

** 등기우편 제출 시,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
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

<첨부2 필수>

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

직종 (분야)	공무직근로자 (통계조사관)	지원 부서			응시번호	50
성명 (한글)			성별			
			생년월일			
연락처	전화번호	() -				
	주소					
	e-mail					
일반 경력사항 *증명서제출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	* (자기소개서 포함) 기입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필수(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)					
국가 데이터처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	* 호남지방데이터청(사무소 포함) 경력에 한하여 경력사항에 기입하되, 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					
자격 사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	
	전산					
	기타					
	* 자격사항 기입 및 자격증 사본제출.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					
기타	저소득층 ☐ 국가유공자 등 ☐ 장애인 ☐ 다자녀 양육자 ☐ 북한이탈주민 ☐ * 해당자 체크	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☐ 동의합니다	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20 년 월 일 성명 : (서명)						
주 1) 이중 취업(경업)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경우 계약 해지 2)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)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) 응시원서 서식과 다르게 불필요한 내용 작성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붙임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)						

<첨부3 필수>

공무직근로자 자기소개서 (A4 2장 이내 작성)

직종	공무직근로자 (통계조사관)	지원부서		응시번호	50
【자기소개】 - 작성방법) 지원동기, 본인의 장단점,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, 개인 신상(출신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면 안됨					
【직무수행 역량】 - 작성방법) 업무경험(경력)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1. 업무에 필요한 경험, 경력, 또는 관련 지식 등 2. 통계조사 수행, 문제 해결 능력, 적극적인 자세 등 3.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					
성명: (서명)					

<첨부4 필수>

(채용 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국가데이터처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☐ 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공통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휴대전화, 전자우편)	채용절차 진행, 본인확인, 이중취업여부 확인,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	미채용자 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해당자 자격·경력·학위·주소록·다자녀·북한이탈주민·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·비자 종류(외국인)	채용요건(자격·경력·학위 등), 채용우대 확인	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미동의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<해당자>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미채용자 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미동의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미동의

2026 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호남지방데이터청장 귀하

<첨부5 해당자에 한함>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데이터처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☐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☐	장애인증명서
☐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☐	주민등록표 등·초본
☐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☐	취업지원대상자증명
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☐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<첨부6 필수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혹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</u>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' 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 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

지 원 자

(서명)

<첨부7 해당자에 한함>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○ 귀하

공지사항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